##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832

발의연월일: 2021. 10. 13.

발 의 자: 조명희・金炳旭・김용판

박대수 · 백종헌 · 성일종

유의동 • 윤창현 • 최승재

추경호 · 홍문표 · 황보승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과 다른 실물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5월에서야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제64조

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의3제2항 중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를 "5 천만원을 뺀 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퍼센트)

제84조제3호 중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5
계산할 때 <u>2022년 1월 1일</u> 전	<u>2023년 1월 1일</u>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u>2021년 12월</u>	<u>2022년 12월</u>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31일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생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	②
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	
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	
금액"이라 한다)에서 <u>250만원</u>	<u>5천만원</u>
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	을 뺀 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
<u>하여</u>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 <신 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 1. 2. (생략)
-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 득금액이 <u>250만원</u> 이하인 경 우
- 4.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생략)
  -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 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

<u>가상자산소득과세</u>	세 율
표준	<u>"" E</u>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0퍼센트
	6천만원 + (3억원을
<u>3억원 초과</u>	초과하는 금액의
	25퍼센트)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1. • 2. (현행과 같음)
3
<u>5천만원</u>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1. (현행과 같음)
2

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 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 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 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 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 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 64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 4. (생략)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같은 조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u>2022년 1월 1일</u> 이 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 터 적용한다.

<u>2023년</u>
1월 1일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용례) ①
<u>2023년 1월 1일</u>
 ②
20001 10 10
<u>2023년 1월 1일</u>

-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 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u> 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u>ㅇ</u> ㅁ
②
<u>2</u>
023년 1월 1일
,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
한 적용례)
<u>2023</u>
년 1월 1일
<u>.</u>